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대응과 피해보상 규정 신설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6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대응과 피해보상 규정 신설	3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5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3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대응과 피해보상 규정 신설

개정안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생략) <u><신설></u>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u>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②</u> (생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¹⁾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연쇄적 효과로 밥상 물가가 상승²⁾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 법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및 수급불안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피해 지원과 보상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재원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3호) 및

1) 2024년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폐사된 가축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8만 6,000마리, 돼지가 1만여마리에 이르는 등 모두 9만 6,000마리로 집계된 바 있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증가한 수치임. (서울신문, “역대급 폭염에 닭·돼지 폐사 급증 축산농가 비상”, 2024.7.29.)

2) 전국적인 폭염으로 시금치, 당근의 도매가격이 각각 전달보다 28.8%, 24.3% 상승하였고, 청상추와 오이도 전달 중순 대비 32.3%, 8% 상승하였는데, 이와 같은 도매가격 상승 분은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음. (아주경제, “기록적 폭염에 물폭탄 예고…또 불안해지는 농산물 가격”, 2024.6.24.)

「측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62호)의 개정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문 의 처
02) 6788-5533